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년)	21:00 (밤)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 모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위령봉사회	10월 5일(일) 11:40	보스코홀
M.E	10월 5일(일) 11:50	6교실
제대헌화회	10월 7일(화) 11:00	6교실
우리어머니 Cu.	10월 12일(일) 11:40	교육관
사도들의 모후 Cu.	10월 12일(일) 11:40	식당

● 알림

- 10월 12일(일) 군인주일로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미사 10월 13일(월) 10:30
- 10월 15일(수) 11시 경로당 월례미사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10월 17일(금) 병자영성체는 구역별로 있습니다
- 10월 국수잔치는 본당행사 일정관계로 없습니다.

● 다음 주일(10/12) 청소 담당 : 4구역

● 신자 신앙교육 10월 특강 안내

일 시	주 제	강 사
10/13(월)19:40	투쟁의 사람, 시몬	주임 신부님

● 16지구 지구장 신부님 본당방문

- 10월 12일(일) 교중미사 주례
- 식당에서 설렁탕과 수육 판매합니다.

● 꾸르실료 참가신청 안내

- 여성 제425차 꾸르실료(11월6일~11월9일)
- 배정인원 : 1명
- 접수마감 : 10월 12일까지(사무실접수)
- 참가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후보기준
 - ①중추적인 사람:인품과 자제력,책임감있는 사람
 - ②봉사적인 사람:복음의 누룩이 될 수 있는 사람
 - ③연령은 40세이상 70세이하인 사람
 - ④세례를 받은 지 3년이상 되고 견진을 받은 사람

● 추석 연휴 미사 안내

10월 5일(일)	06:30, 10:30, 12:00, 18:00 (15:00, 21:00 미사는 없습니다.)
10월 6일(월, 추석)	06:30, 12:00

● 사무실 휴무 안내

- 10월 7일(화)~10월 9일(목)

● 제62주년 구로3동 성당 본당의 날

- 일시 : 10월 19일(일) 교중미사후
 - 청소년과 함께하는 본당 축제
 - 장기자랑 신청 : 개인이나 단체에서 숨길 수 없는 재능을 보여주실 분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노래 제외)
- 본당의 날 미사 안내

10월 19일(일)	06:30, 10:30, 18:00, 21:00 (12:00, 15:00 미사는 없습니다.)
------------	--

● 본당 사무실 직원 친절도 조사

- 서울대교구 사무처에서 본당 사무실직원 친절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방법 : QR코드로 접속하여 설문응답
- 조사기간 : 9월 20일(토)~10월 17일(금)



● 2026년 달력 광고 모집

- 2026년 본당 달력 광고를 모집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 본당사무실 02-857-8541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0/5	박혜선	심재순	도현만	최웅조	손정주
10/12	황원선	신종구	장희석	임종윤	민옥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0/5	김영균	하재민	최웅조	조흥환
10/12	김용진	김영균	박용환	최승일

성가번호 ♪ 입당 : 329 ♪ 예물준비 : 342, 511 ♪ 영성체 : 177, 496 ♪ 파견 : 472



오늘 주님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하지마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2 편 전례와 성사

제 2 장 성 사

제 7 절 혼인성사

제 1 관 혼인과 가정

제 102 조 (혼 인)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부부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도이고,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로 올리셨으므로,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만이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하여는 교회법과 아울러 교회법에서 준용하는 국법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 1055.1059조 참조).

제 103 조 (가 정)

1항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 구성 요소이며 인생의 행복과 구원에 기초가 되는 진실한 사랑과 삶의 보금자리이다. 따라서 부모는 건전한 부부생활과 행복한 가정이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특히 자녀의 종교교육과 성소계발에도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226조; 사목헌장, 47.52항; 바오로 6세, 1975년 12월 8일, 교황권고 「현대의 복음선교」, 71항; 요한 바오로 2세, 1981년 11월 22일, 교황권고 「가정 공동체」 참조).

2항 신자 가정은 가족의 화목과 성화를 위하여 날마다 공동으로 기도하고 주간별이나 월별로 공동 반성의 기회도 마련한다(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18-25항; 사목회의 평신도의안, 83-85항 참조).

3항 가족들의 세례, 견진, 혼인, 성품 성사와 수도서원의 기념일에는 미사참례와 미사봉헌을 비롯한 신심행사로 성사의 의미와 은총을 생활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 2 관 혼인준비

제 104 조 (혼인준비)

1항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사목구 주임사제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받아야 한다(교회법 제1063조 참조).

2항 혼인 예정자는 혼인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내적, 영적 준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적, 물질적 준비는 절도있게 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26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30-37항 참조).

3항 혼인 당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에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 1065조 참조).

제 105 조 (부모의 의무)

부모는 자녀의 혼인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이나 방임이 아닌 관심과 대화로써 자녀가 행복한 혼인을 맺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교회법 제1064조;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5.20.23.31항 참조).

제 106 조 (약 혼)

약혼에 관하여는 한국 민법 제800-806조를 준용한다(교회법 제1062조 참조).